

7.16~20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추가 선포

□ 정부는 오늘(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2일(화),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 7월 27일(일)부터 8월 2일(토)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 7.16.~20.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지역
합계		6곳	36곳
시·군·구	소계	6곳	16곳
	지역	• 경기 가평군 • 충남 서산시·예산군 • 전남 담양군 • 경남 산청군·합천군	• 광주 북구 • 경기 포천시 •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 전남 나주시·함평군 • 경북 청도군 •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읍·면·동	소계	-	20곳
	지역	-	•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 세종 전동면 •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8.3~4일 호우로 인해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서기관	강진모 (044-205-5314)



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24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24개 항목 + 13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국유재산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16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자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역법」 제61조 「예비군법」 제5조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24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자연재난 한정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 지역 추가지원 항목
26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7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8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9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30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1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을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32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3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34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제38조	
36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산지관리법」 제19조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예비군법」 제5조	